강간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

[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. 1. 8. 2014고합58]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김보현(기소), 소정수(공판)

【변 호 인】법무법인 로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은

【주문】

1

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.

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.

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의 점은 각 무죄.

【이유】

]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]